

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금액(제26조제2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업무정지 기간	과징금 금액
1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 6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·제4항을 위반한 때	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	3개월	3천만원
2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 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	법 제43조제2항제2호 법 제46조제2항	1개월	1천만원
3.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때	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	6개월	5천만원
4.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	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	3개월	3천만원
5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 19조제1항 또는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한 때	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	1개월	1천만원
6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 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	법 제43조제2항제1호	6개월	-
7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 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. 다만,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	1개월	1천만원
8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 23조 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어긴 때	법 제43조제2항제3호 법 제46조제2항	3개월	3천만원
9.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때	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	6개월	5천만원
10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36조를 위반한 때	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	6개월	5천만원
11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	법 제43조제2항제3호 법 제46조제2항	1개월	1천만원